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2014. 12. 15.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2013년 6월,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그룹입니다. 프로젝트 그룹에는 11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시민정치포럼 소속 20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 참여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교육학부모회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YMCA전국연맹 · 환경운동연합 · 당진참여연대 · iCCOP 소비자활동연합회 · KYC (총11개 단체)

참여의원(국회 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 : 김관영 · 김광진 · 김기식 · 김상희 · 김제남 · 남윤인순 · 박원석 · 박홍근 · 서기호 · 서영교 · 송호창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은수미 · 이학영 · 진선미 · 최민희 · 홍익표 · 홍준학 의원실 (총20개 의원실)

요약	3
국회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경과	5
1. 시민방청단 활동 개요	
2. 시민방청단 방청 신청 사례 15선	
1)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방청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	
2) 소위원회 방청 불허 사례	
3) 기타	
16개 국회 상임위/소위 방청 허가 현황과 불허 사유	8
1. 상임위/소위 회의 방청 허가 현황	
2. 소위원회 회의 방청이 불가능한 이유	
1) 방청석 부족, 비공개 관행 등을 들어 방청 불허	
2) 소개 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방청 신청 불가능	
제언	12

11월 3주간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 방청단 활동 진행

-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도 국회는 법안과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¹은 국회 회의 방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간 일반 시민들이 국회 각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방청 신청부터 회의 방청까지를 직접 경험해보는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활동을 진행함.
-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28일, 총 3주 간 22명의 시민방청단이 상임위 전체 회의 20회와 소위원회 회의 25회, 총 45회 방청 신청하였음.
- 방청 신청한 전체회의 20회 모두 각 상임위 행정실로부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참가자들이 방청신청을 위해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방청이 허가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4번의 회의는 결국 방청 신청을 하지 못했음. 나머지 3회는 회의 직전에 회의 일정 자체가 취소되어 방청하지 못함.
- 소위원회 회의는 총 25회 방청 신청을 하여 그 중 17회는 방청이 불허되었고, 6회는 방청이 허가되어 회의 방청을 하였으며, 2회는 회의 직전에 회의 일정 자체가 취소되어 방청하지 못했음.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가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단 2곳임.

총 16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방청 불허

- 시민방청단 활동 기간 동안 국회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모두 방청이 허가 되었으나, 소위원회 회의 회의는 △방청석 부족, △일반 방청 금지 관행,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16개 상임위 중 2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방청을 불허함.
- 16개의 상임위 중 9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예결특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방위)가 △방청석 부족, △일반 방청 금지 관행, △민감한 안건 논의 △주무기관과의 밀접한 논의 등을 이유로 방청 신청을 아예 받지

1 2013년 6월,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그룹으로 11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시민정치포럼 소속 20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음. **참여단체**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의정치적기본권내려라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KYC /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상희 김제남 남윤인순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송호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학영 진선미 최민희 홍익표 홍종학 의원

않고 있음.

- 또 16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기획재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가 소위원회의 의결² 이 아닌, 소위원장의 허가로 방청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소위원장들은 '방청석 부족'을 이유로 회의 방청을 불허하였음.
- 16개 상임위 중 10개의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국회운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예결특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가 시민들의 신원 보증인 격으로 국회의원을 섭외해 방청신청서에 의원 명을 명기하는 제도인 '소개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음.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위해 자유로운 국회 회의 방청 허용해야

- 국회 회의 공개는 국민에 대한 의무임. 상임위와 소위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을 위해 국회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 현재 국회 회의 방청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헌법과 국회법의 기본 원리를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임. 또 일부 상임위는 소개의원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고, 상임위 별로 서로 다른 방청 신청 절차를 운영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청 신청 절차를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쉽게 모든 상임위가 통일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함. 또 시민들의 방청 신청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실한 방청 신청을 제한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함.
- 소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을 준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오직 '방청석 부족'만을 이유로 시민 방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민감한 안건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불허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소위원회 회의 역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해야 함.

2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경과

1. 시민방청단 활동 개요

- 활동 목표 : 일반 시민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부터 회의 방청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국회 회의 방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
- 방청단 구성 :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온라인에서 40명의 시민을 공개모집하였고, 이 중 22명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신청 활동을 진행함.
- 활동 기간 : 2014년 11월 10일~ 2014년 11월 28일 (3주 간)
- 활동 결과
 - 시민방청단 총 22명이 11월 3주간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34회, 소위원회 회의 87회 중 전체회의 20회와 소위원회 회의 25회, 총 45회 방청 신청하였음.
 - 전체회의는 20회 모두 각 상임위 행정실로부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총 13회 방청을 진행함. 참가자들이 방청신청을 위해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방청이 허가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4번의 회의는 방청 신청을 하지 못했음. 나머지 3회는 회의 직전에 회의 일정 자체가 취소되어 방청하지 못함.
 - 소위원회 회의는 총 25회 방청 신청을 하여 그 중 17회는 방청이 불허되었고, 6회는 방청이 허가되어 회의 방청을 하였음. 2회는 회의 직전에 회의 일정 자체가 취소되어 방청하지 못했음.

2. 시민방청단 방청 신청 사례 15선

1)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방청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

- 사례 1 : 시민방청단 이영아 씨는 2014.11.1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희망하였고, 회의 방청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회의 방청을 하지 못했음. 법사위 소속 의원을 3명이나 접촉해 소개를 요청했으나, 요청을 받은 의원들은 △소속이 불분명하여 곤란, △지역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 △너무 급박하게 소개를 요청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함. 같은 회의의 방청 신청을 한 시민방청단 이정민, 이조은 씨는 소개의원 섭외에 성공해 방청하였음.
- 사례 2 : 시민방청단 이광국 씨는 2014.11.2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희망하였고, 회의 방청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회의 방

청을 하지 못했음. 미창위 소속 의원을 2명에게 소개를 요청했으나, 요청을 받은 의원들은 △지역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 △의원이 신원 보증을 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함.

- 사례 3 : 시민방청단 이광국 씨는 2014.11.28.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회의 방청 신청을 하지 못함.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2명에게 소개를 요청했으나, 요청을 받은 의원들은 △안면과 연고 없어서 곤란, △지역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 △해당 의원이 당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함.
- 사례 4 : 시민방청단 이정혜 씨는 2014.11.11.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고, 국회의원 2명에게 소개를 요청하였으나, 요청을 받은 의원들은 △일반인의 소위 회의 방청 불허 관행, △소개의 부담스러움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함.
- 사례 5 : 시민방청단 장지원 씨는 2014.11.10.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여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소개를 요청한 후 답변을 기다렸으나, 의원실에서는 회의 당일에 △일반 시민이어서 소개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함.

2) 소위원회 방청 불허 사례

● 방청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청 불허

- 사례 6 : 시민방청단 유동립 씨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정무위 행정실에서는 “회의 진행에 필수 인원인 의원, 보좌관, 비서, 정부부처 공무원만으로도 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방청을 불허함.
- 사례 7 : 시민방청단 한진화 씨는 2014.11.12.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외통위 행정실에서는 “회의장이 좁아 좌석이 부족“하고 “안전이 무엇이나를 떠나 무조건 방청이 불가능“하다면서 회의 방청을 불허함.
- 사례 8 : 시민방청단 이재영 씨는 2014.11.25.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환노위 행정실에서는 “방청 신청자가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하다면서 방청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방청을 불허함.

● 민감한 안전, 기밀 안전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방청 불허

- 사례 9 : 시민방청단 이조은 씨는 2014.11.24.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국방위 행정실에서는 “국방위 소위원회는 원래 비공개”이며, “국방위는 대부분 군사비밀을 다루므로 비공개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라면서 회의 방청을 불허함.

- 소위원회 회의는 일반 방청을 불허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청 불허
 - 사례 10 : 시민방청단 박성은 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예결특위 행정실에서는 “원래 예산결산특별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공개한 전례가 없다” 면서 비공개 관행을 이유로 회의 방청을 불허함.
 - 사례 11 : 시민방청단 이정민 씨는 2014.11.18.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원래 소위원회는 일반인의 방청이 불가” 하다면서 회의 방청을 불허함.
 - 사례 12 : 시민방청단 김현민 씨는 2014.11.14.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였으나, 국토위 행정실에서는 “소위원회 회의는 방청 신청을 해도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원회 방청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았고 전체회의의 방청 신청할 것을 권유함.

3) 기타

- 사례 13 : 시민방청단 박병찬 씨는 2014.11.14.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희망하여 공지된 회의일 4일 전에 방청 신청을 하였음. 회의 당일까지 보건복지위 행정실에 방청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3차례나 했지만, 확인전화를 준다던 행정실에서는 회의 당일까지 방청 허가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음. 결국 회의 당일 박병찬 씨가 상임위에 전화를 해 방청이 허가된 것을 최종 확인하고 회의 방청을 진행함.
- 사례 14 : 시민방청단 최경아 씨는 2014.12.01.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희망하여 소개 의원을 섭외하던 중 의원실을 통해 “외통위 회의 일정이 잡혀야 소개 의원으로 응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고, “외통위가 폐쇄적인 상임위라 의원들조차 회의 일정을 직전에 통보받는 경우가 잦다”는 설명을 들음.
- 사례 15 : 시민방청단 주선하 씨는 2014.11.12.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희망하여 방청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됨. 회의 방청을 위해 대기하던 중 소위 회의에 배석한 정부 부처 직원들이 ‘일반인은 방청할 수 없는 회의인데 어떻게 들어왔느냐’면서, 방청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16개 국회 상임위/소위 방청 허가 현황과 불허 사유

1. 상임위/소위 회의 방청 허가 현황

: 전체회의는 모두 방청 허용, 소위원회 회의는 2개 상임위 외에 모두 불허

-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모두 방청을 허용했지만, 16개 상임위 중 2개의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14개의 상임위가 각 위원회별로 두고 있는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예산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불허했음.
- 16개 상임위원회³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 허가/불허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소위원회 회의 공개 현황

상임위원회	회의	허가/불허여부	상임위원회	회의	허가/불허여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방청 가능	안전행정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정무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불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가능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가능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방청 가능
	예산소위	방청 불허		예산소위	방청 가능
	법안소위	방청 불허		법안소위	방청 가능

3 국회법상 회의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는 윤리특위와 정보위원회는 제외하였음.

2. 소위원회 회의 방청이 불가능한 이유

1) 방청석 부족, 비공개 관행 등을 들어 방청 불허

- 국회법 제 57조⁴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시민방청단 조사 결과, 16개 상임위 중 14개의 상임위가 각 위원회별로 두고 있는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예산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불허했음.
- 각 소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방청 불허 사유는 △방청석 부족, △일반 방청 금지 관행, △민감한 안건 논의 △주무기관과의 밀접한 논의 등임.
- 한편, 16개의 상임위 중 9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예결특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방위)가 △방청석 부족, △일반 방청 금지 관행, △민감한 안건 논의 △주무기관과의 밀접한 논의 등을 이유로 방청 신청을 아예 받지 않고 있음. <표2> 참조

<표2> 상임위 행정실에서 소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

상임위	불허 사유	11월 주요 안건
교육문화위	방청석 부족 민감한 안건 논의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국토교통위	방청석 부족 주무기관과 밀접한 논의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국회운영위	방청석 부족 민감한 안건 논의 회의에 영향 주는 방청 때문에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법제사법위	방청석 부족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안전행정위	방청석 부족 민감한 안건 논의 회의에 영향 주는 방청 때문에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예결특위	방청석 부족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정무위	방청석 부족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외교통일위	방청석 부족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4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방위	방청석 부족 주무기관과 밀접한 논의 민감한 안건 논의 일반인 방청 불허 관행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	---	---

- 또 16개 상임위 중 7개(기획재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가 소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소위원장의 허가**로 방청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소위원장들은 '방청석 부족'을 이유로 회의 방청을 불허하였음. <표3> 참조

<표3> 소위원장의 허가로 방청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상임위	불허 시 사유	11월 주요 안건
기획재정위	자리부족 주무 기관 밀접한 논의 필요 (2014.11.11. 예산소위 신청 결과)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농림축산위	자리부족(2014.11.17. 법안소위 신청 결과)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미래창조위	자리부족(2014.11.11. 예산소위 신청 결과)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산업자원위	자리부족(2014.11.17. 법안소위 신청 결과)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동의안
환경노동위	자리부족(2014.11.25. 법안소위 신청 결과)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보건복지위	방청 허용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여성가족위	방청 허용	• 소관 법률 심사 •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2) 소개 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방청 신청 불가능

- ‘소개의원 제도’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의 안전,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일부 상임위에서 운영하고 있음. 소개의원 제도를 운영하는 상임위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원보증인 격으로 국회의원을 섭외해 방청신청서에 의원 명을 명기해야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
- 이 규정은 국회가 행정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으로, 사실상 일반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시민방청단 조사 결과, 16개 상임위 중 10개의 상임위가 방청신청서에 소개의원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표4> 각 상임위원회 방청 시 소개의원 필요 여부 현황

상임위	소개의원	상임위	소개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필요	국토교통위	불필요
국방위원회	필요	기획재정위	불필요
국회운영위원회	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불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필요	보건복지위	불필요
법제사법위원회	필요	산업통상자원위	불필요
안전행정위원회	필요	여성가족위	불필요
예결특위	필요		
정무위	필요		
외교통일위	필요		
환경노동위	필요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위해 자유로운 국회 회의 방청 허용해야

방청 신청 절차 통일하고, 소개의원 제도 폐지해야

-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있음. 현재 국회 회의 방청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과 국회법의 기본 원리를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임. 또 일부 상임위는 소개의원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고, 상임위 별로 서로 다른 방청 신청 절차를 운영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회 회의 공개는 국민에 대한 의무임. 상임위와 소위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을 위해 국회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방청 신청 절차는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쉽게 모든 상임위가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방청 신청을 사실상 제한하는 소개 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함.
- 소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을 준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오직 '방청석 부족'을 이유로 시민 방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필요하다면, 회의장 내에 일반 시민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음.
- 또 민감한 안건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소위원회 회의는 현재 실시간 인터넷 의사중계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해야 함.
- 국민의 대의 기관이면서도 방청 제도를 까다롭게 만들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직접 모니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님. 국회 회의 방청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임.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이지현 팀장, 이선미 간사)